**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시행 2024.8.6] [인천대학교학교시행세칙 제181호, 2024.8.6, 일부개정]

인천대학교 인천대학교 교무과 032-835-92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인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시행에 따른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

**제2조**(입학의 정의) 입학이란 본교 각 대학에 신입학·재입학·편입학하는 것을 총칭하며, 본교 학생으로서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신·편입생 모집요강) 총장은 매 학년도 신·편입생의 선발기준과 전형방법 및 모집인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4.8.6.>

**제4조**(신·편입학 허가 절차) <개정 2024.8.6.>

<항삭제 2024.8.6.> ① 신·편입생 선발은 해당 전형별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사정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개정 2024.8.6.>

② 합격자 발표 시 예비 합격후보자 약간 명을 사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24.8.6.>

③ 신·편입학 허가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해 학년도 신·편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통해 따로 정한다.<개정 2024.8.6.>

**제4조의2**(입학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적을 말소하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한다.

1. 지원자격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자 귀책사유로 입학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에 허위사실이나 기재 금지사항을 기재한 경우

3. 입학원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지원자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 요사항을 인위적으로 누락한 경우

4. 졸업(또는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기타 지원자격 증빙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개정 2020.9.23.>

5. 평가자 사전접촉, 대리시험 등으로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6.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 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신설 2020.9.23.>

7.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개정 2020.9.23.>

② 입학전형 관련자는 제1항에 규정된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학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입학본부장은 해당 사실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개정 2019.5.24.>

③ 입학본부장은 제2항의 절차 진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입학허가취소 등의 대상자나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관련 서류의 추가제출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5.24.>

④ 입학본부장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입학허가취소 등의 대상자나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7.11.2., 개정 2019.5.24.>

**제5조**(학사편입) 삭제 <2019.5.24.>

**제6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학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인원의 범위에서 해당 학과(부)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재입학할 수 없다. <개정 2022.6.10.>

1. 신·편입학생으로서 입학 후 첫 1개 학기 중에 자퇴하거나 제적된 자<신설 2022.6.10.>

2. 징계에 의해 제명된 자<신설 2022.6.10.>

② 재입학은 편입학에 우선하여 선발하며, 재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재입학 원서 등 정해진 서류를 매 학기개시일 전 재입학 신청기간 내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입학 허가자로 선정된 자는 재입학 허가 학년도 해당 학기 정해진 기간 내 등록을 마쳐야 하며, 총장은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재입학 허가는 1회에 한한다.

⑤ 폐지된 학과(부)의 제적생은 관련 단과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지정하는 유사 또는 동일 학과(부)로 재입학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학사징계 제적자에 한하여 제적된 학기 이후 1개 학기가 경과한 후에 재입학을 할 수 있다.<신설 2019.9.10., 개정 2023.9.1.>

**제7조**(입학서류 보존) 삭제 <2019.5.24.>

**제3장 전과(부)**

**제8조**(전과자격) 2학년 이상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로서 다음 표의 신청시기와 졸업학점에 따른 최소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2.5이상인 자는 전과(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1., 2020.6.26.>

| 신청시기 | 졸업학점 130 | 졸업학점 131 | 졸업학점 132 | 졸업학점 133 | 졸업학점 134 | 졸업학점 135 | 졸업학점 136 | 졸업학점 137 | 졸업학점 138 | 졸업학점 139 | 졸업학점 1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학년 1학기 | 33 | 33 | 33 | 34 | 34 | 34 | 35 | 35 | 35 | 35 | 35 |

| 2학년 2학기 | 49 | 50 | 50 | 51 | 51 | 51 | 52 | 52 | 53 | 53 | 53 |

| 3학년 1학기 | 65 | 66 | 66 | 67 | 67 | 68 | 68 | 69 | 69 | 70 | 70 |

**제9조**(전과신청) 전과(부)를 희망하는 자는 해당 학기 개시일 이전 정해진 기간에 전과(부)원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7.6.1.>

**제10조**(전과허가) ① 전과(부) 허가인원은 전입학과(부)의 「학칙」 별표 1에 따른 입학정원 또는 이 「시행세칙」 별표에 따른 기준인원의 20% 이내로 하되, 전입학과(부)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다만, 동일 모집단위 내에서의 전과(부)는 2학년 2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3학년 중 전과(부)는 다음 각 호의 동일계열에 한하여 허가한다.

1. 인문·사회계열 :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글로벌정경대학, 경영대학, 도시과학대학 내 도시행정학과, 동북아국제통상학부, 법학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영어교육과·일어교육과·유아교육과·역사교육과·윤리교육과<개정 2015.12.14., 2017.2.24., 2019.5.21.,2022.7.8.>

2. 자연계열 :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정보기술대학, 도시과학대학 내 도시환경공학부, 도시공학과 및 도시건축학부, 생명과학기술대학, 사범대학 수학교육과<개정 2015.12.14., 2022.7.8.>

3. 예·체능계열 : 예술체육대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개정 2022.7.8.>

② 주간·야간과정간 상호 전과(부)는 결원이 있을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③ 편입학한 자 및 「학칙」 제11조제3항의 전공예약 입학자는 전과(부)할 수 없다. 다만, 인천전문대학과의 통합으로 인하여 특례 편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1회에 한하여 동일 단과대학내에서 전과(부)를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5.12.14., 2022.7.8.>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공과대학, 정보기술대학, 도시과학대학 내 도시환경공학부, 도시공학과 및 도시건축학부, 생명과학기술대학 내 생명공학부는 동일 단과대학으로 본다.<신설 2022.7.8.>

⑤ 사범대학 허가 인원은 재입학, 정원 외 입학 및 전과 등의 인원을 합하여 학과별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전과(부)허가는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전과(부) 허가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학기 휴학 및 미복학 시에는 전과(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전공배정) ① 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1학년 말에 전공을 배정한다.

② 전공별 기준인원은 별표와 같으며 배정인원은 전공별 기준인원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전공배정 대상인원이 기준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학부 내 전공별 기준인원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③ 전공배정은 학부장이 학생의 적성, 학업성적 및 상담지도 결과 등을 참작하여 배정계획을 학장에게 제출하고, 학장은 이를 검토하여 전공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학생 및 교무처장에게 통보한다.

**제4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12조**(등록금) ① 학생의 매 학기 등록에 따른 등록금과 납부기일은 총장이 정하여 학기개시 20일 전에 공시한다.

② 수업연한 8학기 경과자로서 이수학점 부족으로 졸업하지 못한 학생의 등록에 따른 등록금은 다음과 같다.

| 학점 수 별 | 수업료 | 학생 회비 |

| :----------- | :---------------: | :------: |

| 1학점 ~ 3학점 | 총액의 6분의 1 | 전액 |

| 4학점 ~ 6학점 | 총액의 3분의 1 | " |

| 7학점 ~ 9학점 | 총액의 2분의 1 | " |

| 10학점 이상 | 전액 | " |

③ 수업연한 8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이수학점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별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수강신청 지도 및 절차) ①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교과과정표와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해당 학기에 이수할 교과목을 선정한 후 담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강신청을 한다.

② 학생은 수강신청 완료 후 정해진 기일 내에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9.10.>

③ 본교 교원의 자녀는 가급적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소속 학과의 학과(부)장 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9.9.10.>

④ 본교 교원은 자녀가 본인의 강의를 수강신청한 경우 그 사실을 개강 후 4주 이내 교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9.10.>

⑤ 총장은 제4항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9.9.10.>

**제14조**(수강신청학점) ① 학생은 매 학기 「학칙」 제56조에 따른 허용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교과목 이수단위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 취득학점보다 1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최종학년 학생의 매 학기 최저 수강신청학점은 9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 8학기 경과자로서 이수학점 부족으로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잔여학점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교과목의 재수강) ⓛ 학생은 취득 성적이 C+ 이하인 교과목을 재수강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교과목에 한하며, 교과목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해당 교과목 개설을 주관하는 학과(부)장이 동일한 교과목임을 인정할 경우에 재수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로 동일 교과목을 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B+ 이하의 범위에서 상위성적 하나만을 인정하고, 종전 성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성적표에 재수강 과목임을 표시한다.

**제16조**(재수강 과목변경) 재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이 폐강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 개설을 주관하는 학과(부)장이 지정하는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할 수 있다.

**제17조**(수강신청과목의 제한) ① 강의시간표상 중복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며, 착오 또는 고의로 동일 내용의 교과목을 중복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나중에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② 선·후 순위를 정하여 표시한 교과목의 경우에 선순위 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의 후순위 교과목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학점삭제) 수강신청 없이 수강한 교과목의 취득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학칙」 및 이 「시행세칙」에 따른 한정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을 우선하여 초과학점을 삭제하고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제19조**(수강신청변경) ① 학생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수강신청사항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강의 예정 교과목이 폐강된 경우에 학과(부)장은 해당 학생의 수강신청과목을 변경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강의시간 변경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소속 학과(부)장을 거쳐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수강신청서 관리 및 보관) 학생의 수강신청서는 해당 학기 종료시까지 보관한다.

**제5장 휴학·복학**

**제21조**(휴학기간) ① 휴학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6.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학은 제1항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20.3.17., 2020.6.26.>

1. 입대휴학 : 군복무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최대6년)

2. 질병휴학 : 2년 이내

3. 육아휴학 : 2년 이내

4. 창업휴학 : 2년 이내

5. 재난휴학 : 1년 이내

6. 직권휴학 : 총장이 정하는 기간

③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일수 3분의 1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휴학은 기한 이후에도 사유발생 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0.6.26.>

④ 신입생은 입학 후 첫 2개 학기 동안,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1개 학기 동안은 휴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중 제4호를 제외한 휴학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6.26., 2022.6.10.>

⑤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창업지원단의 심의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허가한다.<신설 2019.9.10.>

**제22조**(휴학절차)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담임교수와 학과(부)장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한 후 학적변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중 1부.

2. 질병휴학 : 종합병원장의 4주 이상의 진단서 1부.

3. 육아휴학 : 임신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창업휴학 : 창업지원단 확인서 1부.<개정 2019.9.10., 2020.6.26.>

② 휴학 중인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6.26.>

**제23조**(군입대 휴학의 취소) ① 군입대로 인한 휴학자가 귀가 조치되었을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신고하여 복학 또는 일반휴학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귀가조치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복학 또는 일반휴학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학칙」에 따라 제적한다. <개정 2019.9.10>

**제24조**(복학) ① 휴학자는 복학 해당시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과(부)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제대자는 제대 후 1년 이내의 이수 해당 학년 및 학기에 복학할 수 있다.

② 복학자는 휴학 전 해당 학년 및 학기의 성적을 그 의사에 따라 취소하고 재이수할 수 있다.

**제6장 교과 및 수업**

**제25조**(교과과정편성) ① 교양 교과과정은 영역별로 기초교육원장이 편성안을 작성하고, 전공기초를 포함한 전공 교과과정은 학과(부)별로 학장이 편성안을 작성하여 총장이 정한다. 다만, 자유전공학부·국제자유전공학부 입학생 및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생의 경우 교양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5., 2024.5.13.>

② 전공과목의 교과과정을 개편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부)장이 개편사유와 신·구 교과목을 대비한 개편안을 학장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군무관후보생(R.O.T.C) 군사교육과정의 이수학점은 학생군사교육단장이 편성안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④ 실험·실습, 실기 및 특정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은 3학점 단위로 편성하고 동일 교과목을 2학기 이상 개설할 때에는 선·후 순위를 (1), (2)로 표시한다.

**제26조**(개설교과목) ① 학장 및 기초교육원장은 교과과정에 의한 다음 학기의 개설 교과목 및 담당교수일람표를 직전 학기 수업종료 전까지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무처장은 개설 교과목표를 취합하여 교과과정표와 대조한 후 수업계획을 수립한다.

③ 핵심교양과목과 심화교양과목은 수강신청자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개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8.3.27., 2019.9.10., 2022.1.21., 2023.1.5.>

1. 외국어회화 및 예술체육실기 과목 수강신청자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

2. 야간강좌인 경우

3. 그 밖에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전공심화과목은 수강신청자 수가 5명 이상 또는 별표에 따른 학과(부)·전공별 기준인원의 25% 이상일 경우에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8.8.1., 2022.7.8., 2024.5.13.>

1. 수강대상 학생 수가 현저하게 적은 전공과목

2. 규정 및 지침에 별도로 정한 전공과목

⑤ 기초교양과목은 수강신청자 수가 15명 이상일 경우에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8.3.27., 개정 2023.1.5>

⑥ 국책사업 등 외부기관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개설되는 과목은 수강신청자 수가 적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16.3.21>

⑦ 온라인 교육(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운영되는 교과목의 개설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9.10>

**제27조**(강의시간표 편성) ① 매 학기 강의시간표는 수강신청기간 전에 공시되어야 한다.

② 교양, 일반선택, 교직 및 R.O.T.C과목의 강의시간표는 교무처장이 편성하고 전공과목은 학장이 편성한다.

**제28조**(강의시간표 편성기준) ① 강의시간의 단위는 50분 또는 75분으로 한다. <개정 2023.1.31.>

② 동일교과목 연속강의의 경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23.1.31.>

1. 50분 수업의 경우(2교시까지)

2. 전임교원 외 교원의 담당 교과목 및 교양 선택과목(50분 수업인 경우 3교시, 75분 수업의 경우 2교시까지)

3. 야간강의, 실험·실습·실기과목

③ 과목당 수강인원의 단위는 100명을 기준으로 하고 형편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교양과목은 150명 이상 대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매학년도 평균 9시간으로 하며, 보직 교원 및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책임시간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9.10.>

**제29조**(강의계획서) 교원은 담당 교과목의 교육목표, 주별 강의계획, 참고문헌, 과제 및 평가 등이 기재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기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출석확인 및 출강부) ① 교원은 강의시간마다 자동출석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학생의 출석을 확인하며, 신고 없이 계속하여 1개월 이상 결석자는 학장에게 통보하고 학장은 이를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② 전임교원 외 교원은 출강부에 날인(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23.1.31.>

**제31조**(휴·결강과 보강) ① 학장은 강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 없이 결강 또는 휴강하는 강의가 없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학사력(학사일정)에 계획이 없는 휴강 또는 교원의 사정에 의한 결강시간은 해당 학기에 보강하여야 한다.

③ 보강은 사전에 보강계획서를 작성, 학과(부)장을 거쳐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교외 출강) ① 교원이 교외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소속 대학장의 출강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교외 출강시간은 주당 3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교내 담당 강의시간과 합하여 학기별로 주당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5.25., 2017.2.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원은 학기당 4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교내 담당시간과 합하여 학기당 28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외에 출강 할 수 있다.<신설 2016.5.25.>

**제7장 전공이수등**

**제33조**(부전공) ① 본교 학생은 전공과정 이외에 부전공 과정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수할 수 있다.

1. 이수신청 : 부전공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개시일 2주 전까지 정해진 서식에 의한 부전공 이수신청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는 부전공 이수를 신청할 수 있다.

3. 이수허가 : 총장은 부전공 학과(부), 전공의 심사를 거쳐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이수를 허가한다.

② 부전공은 본교에 설치된 학과(부), 전공을 대상으로 하며, 각 학과(부), 전공은 부전공 필수과목을 9학점 이내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선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주전공 학과(부), 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부전공 교과목과 동일한 때에는 부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학점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부전공 이수학생은 매 학기 주·부전공 학과(부)장, 전공주임 교수의 수강지도를 아야 하며, 수강신청서에 부전공 교과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부전공 과정 이수 상 실험·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수자가 해당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부전공의 정해진 전 과정을 이수한 자는 주전공 이수 사정 절차에 준하여 사정하며, 해당 사항을 학적부에 기재하고 졸업증서에 표시한다.

⑦ 사범대학에서 부전공을 이수 시 비사범계열 학생은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⑧ 부전공 선택자가 졸업 시까지 정해진 부전공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이미 취득한 교과목은 선택과목의 학점으로 처리한다. 다만, 본인이 졸업을 연기하고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주전공 및 부전공 학과(부)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상적인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8.8.1.]

**제34조** 삭제 <2018.8.1.>

**제35조** 삭제 <2018.8.1.>

**제36조** 삭제 <2018.8.1.>

**제37조** 삭제 <2018.8.1.>

**제38조** 삭제 <2018.8.1.>

**제39조** 삭제 <2018.8.1.>

**제40조** 삭제 <2018.8.1.>

**제41조** 삭제 <2018.8.1.>

**제8장 삭제 <2018.8.1.>**

**제42조**(복수전공) ① 본교 학생은 전공과정 이외에 복수전공 과정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수할 수 있다.

1. 이수신청 :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개시일 2주 전까지 복수전공 이수신청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는 복수전공 이수를 신청할 수 있다.

3. 이수허가 : 총장은 해당 학과(부), 전공의 학생 수, 교원확보율, 시설·설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복수전공학과(부), 전공의 심사를 거쳐 복수전공 이수를 허가한다.

② 복수전공은 본교에 설치된 학과(부), 전공을 대상으로 한다.

③ 복수전공학과(부)·전공의 과목을 복수전공 신청 이전에 일반선택과목이나 부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2.7.8.>

④ 소속학과(부), 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복수전공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에는 소속 전공과 복수전공 교과목을 이수학점으로 중복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중복 인정하는 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복수전공학과(부), 전공의 수험료가 소속학과(부), 전공의 수업료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복수전공을 중도에서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수전공포기신청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복수전공을 포기한 학생은 소속학과(부), 전공의 일반학생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때 이미 취득한 교과목은 선택학점으로 처리한다. 다만, 복수전공 이수를 포기한 자 중 제33조제7항에 따른 부전공 이수 인정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 의사에 따라 부전공 이수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미 취득한 교과목은 부전공 학점으로 처리한다.

⑧ 복수전공자에 대한 학위는 소속학과(부), 전공 및 복수전공학과(부), 전공에서 요구하는 졸업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동시에 수여한다. 이 경우 제1전공의 학위수여는 복수전공 전 과정을 마칠 때까지 유보한다.

⑨ 사범대학에서 복수전공 이수 시 비사범계열 학생은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8.8.1.]

**제42조의2**(연계전공) ① 연계전공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1. 주관학과(부), 전공과 연계전공 관련 인접학과(부), 전공이 연계하여 운영계획서를 첨부한 설치 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한다.

2. 총장은 연계전공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수여학위 및 졸업생 진로 등을 심사하여 이를 승인한다.

3. 연계전공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연계전공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연계전공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관학과(부)장, 전공주임교수 및 연계학과(부), 전공주임교수로 구성된 연계전공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연계전공 주임교수가 된다.

③ 연계전공의 교과과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계전공 주임교수가 편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한다.

1. 주관학과(부), 전공 및 연계학과(부), 전공은 교육과정에 연계전공의 전공기초, 전공핵심 및 전공심화로 편성된 과목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7.8.>

2.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과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본교에서 설치·운영하는 연계전공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⑤ 연계전공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개시일 2주 전까지 이수신청서를 소속학과(부)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이수는 학생 수, 교원확보율 및 시설·설비 등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⑦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이수신청 학생의 자격 조건, 성적 및 이수제한 사항 등의 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공지하고 이수대상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⑧ 연계전공의 이수절차, 졸업사정 및 학위수여 등에 관하여는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에 관한 조문을 준용한다.

⑨ 연계전공의 운영에 관하여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8.1.]

**제42조의3**(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의 연계·융합전공) ①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하여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이하 “타 대학과의 연계·융합전공”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학과(부) 또는 부속기관에서 운영계획서를 첨부한 설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타 대학과의 연계·융합전공의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8.1.]

**제42조의4**(학생설계융합전공) ① 본교 학생은 전공과정 이외에 학생설계융합전공 과정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수할 수 있다.

1. 학생설계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개시일 2주 전까지 학생설계융합전공 신청서를 소속학과(부)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속학과(부)장은 학생이 신청한 전공의 해당 분야 전공교수와 학생의 담임교수로 학생설계융합전공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전공의 타당성, 교육과정 등을 심사·보완한 후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소속학과(부)장은 승인받은 학생설계융합전공 신청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설계융합전공의 이수 교육과정은 부전공 33학점 이상, 복수전공 63학점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학생설계융합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승인받은 교육과정을 부전공 21학점 이상, 복수전공 4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5.13.>

③ 학생설계융합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매 학기 수강신청 시 담임교수의 지도 및 수강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담임교수는 위원회를 통하여 학생설계융합전공의 교육과정을 변경 및 보완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학장에게 보고하고,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학생설계융합전공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학생설계융합전공 포기원을 소속학과(부)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학생설계융합전공의 이수절차, 졸업사정 및 학위수여 등에 관하여는 부전공 및 복수전공 관련 조문을 준용한다.

⑦ 그 밖에 학생설계융합전공의 운영에 관하여 학칙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8.1.]

**제43조** 삭제 <2018.8.1.>

**제44조** 삭제 <2018.8.1.>

**제45조** 삭제 <2018.8.1.>

**제46조** 삭제 <2018.8.1.>

**제47조** 삭제 <2018.8.1.>

**제48조** 삭제 <2018.8.1.>

**제9장 시험과 성적**

**제49조**(시험의 종류) 시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말시험 : 학기말에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시험

2. 수시시험 : 학기 중간에 수시로 평가하는 시험

3. 임시시험 : 과제물, 학습세미나, 그 밖의 학습활동 평가시험

4. 추가시험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기말시험, 결시자에 과하는 시험

5. 특별시험 :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고 시험만으로 학점을 취득하게 하는 시험

6. 졸업시험 : 졸업논문, 졸업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등으로 졸업에 필요한 시험

**제50조**(시험 시행 요령) 시험은 학사력에 의해 실시하되 다음 요령에 따른다. 다만, 시험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시험 시간 : 과목당 50분 1교시를 원칙으로 한다.

2. 시험시간표 : 시간표는 교과목·교시·수험실·수험대상자 감독교수 등을 표시·작성하여 시험시간 1주 전에 공고한다.

3. 수험생배치 : 수강단위로 배치하되 분반할 수 있다.

4. 감독교수 배치기준 : 전공과목은 원칙적으로 담당교수를 배치하며, 그 이외의 과목은 담당교수와 무관하게 배치할 수 있다. 감독자수는 수험생 수에 따라 1~2명으로 한다.

5. 수험생 확인 : 감독교수는 시험시간마다 수험생을 학생증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6. 답안지 확인 : 감독교수는 시험종료 후 수험생 수와 답안지 수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표철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7. 부정행위자 처리 : 감독교수가 부정행위자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본인으로부터 부정행위임을 자인 받은 후 답안지에 "부정행위”라고 명기하여 교무처장에게 인계하며 교무처장은 즉시 학생·취업처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19.5.24.>

**제51조**(수시시험)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 중간에 수시로 수시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른 수시시험의 성적은 제55조의 수시시험성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2조**(임시시험)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시로 과제물을 부과하거나 학습세미나, 실기시험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임시시험의 성적은 제55조의 기타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제53조**(추가시험) ① 부득이한 사유로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해당 시험기간 내에 불응시신고서(관계증빙서 첨부)를 학장에게 제출하고, 불응시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해당 학생으로부터 불응시확인서를 제출받은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시험기간 종료 후 추가시험의 실시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응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4조**(학점취득 특별시험) ① 본교에서 시행하는 특별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학점을 인정하며, 그 기준과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1.>

② 특별시험은 교양과목에 한하며 동 시험으로 취득한 성적은 매 학기의 기준학점에 관계없이 학적부에 등재하고 특별시험으로 취득한 성적임을 표시한다.

③ 특별시험 지원자에게는 정해진 수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성적평가) ① 교과목의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기말시험, 수시시험을 합쳐 60%, 출석성적 20%, 기타성적 20% 비율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및 방송·통신에 의해 수업을 운영하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이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출석성적은 2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각 교과목의 일주일 강의분량을 출석하지 않은 경우 1점씩 감하여 산출한다. 다만, 공결로 인정된 경우에는 감하지 아니한다.

③ 교과목당 실제 수업시간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한 자는 시험 등 성적에도 불구하고 학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④ 학업성적의 평가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개정 2024.8.6.>

| 수강학생수 | A등급 | B등급 |

| :-------- | :------ | :------ |

| 21명 이상 | 40% 이하 | 40% 이하 |

| 20명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 \*\*참고\*\*

> - 등급별 인원 산정 시 소수는 절상하여 처리합니다.

> - A등급을 기준 인원보다 적게 평가한 경우, 잔여 인원을 B등급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 제5호 및 제9호에 해당하여 성적평가 방법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는 성적평가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1. 원어(영어)강의 교과목

2. 영어졸업인증자격 기준점수를 별도로 상향조정한 학과(부·전공)의 영어 및 영어회화 교과목

3. 군사학 교과목

4.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정된 3, 4학년 학생의 교직과목 및 자격증취득관련 교과목 중 법령이나 지침으로 한계성적 이상을 요구하는 교과목

5.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 학생

6. 교무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캡스톤디자인

7. 실험·실습·실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공교과목<개정 2024.8.6.>

8. 수강인원이 10명 이하인 전공교과목<개정 2024.8.6.>

9. 부·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 중 해당 전공교과목 수강자<개정 2024.8.6.>

10. 예술체육실기 교양교과목<개정 2024.8.6.>

11. 그 밖에 총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개정 2024.8.6.>

12. 국가재난, 천재지변 또는 심각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6.5.25., 2020.6.26., 2024.8.6.>

⑤ 다음 각 호의 교과목은 P(Pass)/F(Fail)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현장교육·실습 및 해외인턴십 교과목

2. 세미나 및 포럼 등의 교과목

3. 사회봉사 교과목

4. 그 밖에 총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

⑥ 본교 교원은 자녀가 본인의 강의를 수강한 경우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 산출 근거를 학장에 제출하고, 학장은 제출된 성적이 공정하게 산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학장이 당사자인 경우 학과(부)장이 확인한다. <신설 2019.9.10>

⑦ 총장은 제6항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9.10>

**제56조**(성적표 제출 및 정리)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기말시험 종료 후 7일 이내까지 성적평가표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시험답안지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

② 교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성적사항을 정리하고, 성적정정기간을 거친 후 학적부에 등재한다.<개정 2018.3.27.>

**제57조**(결시자특례) ① 병역·질병·국내외파견·운동선수의 출전, 그 밖에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기말시험 및 수시시험,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해당 시험기간 이전까지 성적인정원(관계증빙서 첨부)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서를 받아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시시험 또는 임시시험 등의 성적을 참작하여 성적을 인정하되 B+를 초과할 수 없다.

**제58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1. 시험 중 부정행위로 해당 시험 또는 전과목을 무효처분 받은 자

2. 미등록 응시자 또는 출석 미달자의 성적

3. 수강신청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제59조**(성적의 정정) 교과목 담당교수가 평가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된 성적표는 정정할 수 없다. 그러나 사무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정해진 정정 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교수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다.

**제10장 학사징계**

**제60조**(학사징계) ① 매 학기 말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1.80 미만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다만, 학사경고 대상자 중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학내 부서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1회에 한하여 학사경고를 면제한다. <개정 2018.3.27.>

②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를 3회 받은 자는 제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본인에게 통보한다.<개정 2018.3.27.>

**제11장 학생상벌 본장삭제 <2022.2.21.>**

**제61조** 삭제 <2022.2.21.>

**제62조** 삭제 <2022.2.21.>

**제63조** 삭제 <2022.2.21.>

**제64조** 삭제 <2022.2.21.>

**제65조** 삭제 <2022.2.21.>

**제66조** 삭제 <2022.2.21.>

**제67조** 삭제 <2022.2.21.>

**제68조** 삭제 <2022.2.21.>

**제69조** 삭제 <2022.2.21.>

**제70조** 삭제 <2022.2.21.>

**제71조** 삭제 <2022.2.21.>

**제72조** 삭제 <2022.2.21.>

**제73조** 삭제 <2022.2.21.>

**제74조** 삭제 <2022.2.21.>

**제75조** 삭제 <2022.2.21.>

**제76조** 삭제 <2022.2.21.>

**제77조** 삭제 <2022.2.21.>

**제78조** 삭제 <2022.2.21.>

**제12장 졸업논문**

**제79조**(졸업논문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졸업논문으로 본다.

1. 졸업논문

2. 졸업종합시험

3. 실험·실습보고서

4. 실기발표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하되 졸업논문과 같은 효력을 인정한다.

**제80조**(종류선정) ① 학과(부)장은 해당 학과(부)의 제79조에 따른 졸업논문의 종류를 선정하여 정해진 서식에 의한 선정서를 학장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무처장은 전공 학과(부)별 졸업논문 종류 선정 사항을 교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확정한다.

**제81조**(종류 선정시기) 졸업논문 종류의 결정은 매 학년도 초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행 종류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학과(부)는 생략할 수 있다.

**제82조**(논문제목 제출) ① 졸업논문의 제목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6학기까지 취득학점이 105학점 이상 가능한 자

2. 4학기까지의 학업성적상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자

3. 중도 수료 또는 유급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

② 졸업논문 제목은 6학기의 11월 30일 또는 5월 31일까지 학과(부)장을 거쳐 학장에게 제출한다.

③ 졸업논문 제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졸업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제83조**(지도교수 배정) ① 각 학과(부)장은 졸업논문 제목을 접수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학생별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② 졸업논문 지도교수의 배정결과는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논문지도) 논문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졸업논문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지도하여야 한다.

**제85조**(작성방법) 졸업논문의 작성방법 및 체제는 본교 논문집 작성체제에 따르며 지정된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86조**(논문제출) ① 졸업논문(실기발표, 실험·실습보고서, 졸업종합시험)의 제출 또는 응시자격은 「학칙」제22조 및 제6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졸업논문은 8학기의 11월 30일 또는 5월 31일까지 논문 지도교수를 거쳐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심사평가) 졸업논문은 논문 지도교수 포함 관련 분야의 2인 이상의 전임교수가 심사하며 A, B, C, D, F급으로 평가하되 D급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88조**(실험·실습보고서 및 실기발표) ① 실험·실습보고서 및 실기발표에 관한 절차 및 심사는 졸업논문에 준한다.

② 실기발표는 2인 이상 공동으로 할 수 있되 발표는 공개되어야 한다.

**제89조**(조기 졸업자) ① 「학칙」제22조에 따라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4학기의 학점이 나온 후 학과(부)장 및 학장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조기졸업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조기졸업신청원을 근거로 그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조기졸업자의 졸업논문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제90조**(학적정리) 졸업논문 평가 결과는 학점화하지 아니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제91조**(심사결과 보고) 각 학장은 졸업논문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졸업예정일 20일 전까지 정해진 서식에 의한 심사보고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합격취소) 타인의 졸업논문을 원안과 같이 복사하거나 내용의 모방이 극심하였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논문합격을 취소한다.

**제93조**(불합격자 처리) ① 졸업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판정일로부터 2년(병역 복무기간 제외) 이내에 졸업논문을 재제출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졸업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로서 졸업논문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의 처리절차는 제1항과 같다.

**제13장 학·석사 연계과정**

**제94조**(학·석사 연계과정) 학·석사 연계과정(이하 “본 과정”이라 한다)은 대학원과의 연계에 한하며, 대학원 입학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제95조**(지원자격) 본교 5학기 또는 6학기 이수자로서, 5학기 이수자는 93학점 이상(다만, 교환학생 및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이수자에 한해 83학점 이상) 취득하고, 6학기 이수자는 111학점 이상(다만, 교환학생 및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이수자에 한해 101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그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3.3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9.1.>

**제96조**(학생선발) ① 학생은 학·석사 연계과정을 정해진 기일 내에 대학원 지도교수 승인 및 추천서, 연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교무처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3.9.1., 2024.7.31.>

<호 삭제 2023.9.1.>

② 신청한 학생이 신청학과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대학원 입학 지원 전까지 교무처장에게 신청한다.<개정 2024.7.31.>

③ 교무처장은 신청 및 변경신청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통보한다.<신설 2024.7.31.>

④ 대학원장은 신청사항을 대학원 입학전형을 통해 심사하고, 그 합격여부를 교무처장에게 통보한다.<신설 2024.7.31.>

⑤ 선발된 학생이 대학원 입학전에 일반휴학을 할 경우 본 과정 선발을 취소한다.<신설 2024.7.31.>

**제97조**(학업이수) ① 본 과정에 선발된 학생은 매 학기 2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해당 학과에서 학사과정의 전공과 석사 연계과정의 전공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서 학사과정의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이 면제된다. <개정 2023.9.1.>

② 학사과정 시 본교 대학원의 교과목을 최대 12학점까지 별도로 취득할 수 있으며 그 학점 및 성적은 대학원에서 관리한다.<개정 2023.9.1.>

③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최대 6학점의 범위에서 학사과정 전공심화 학점으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과에서 석사과정 연계 전공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고, 상이하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학생이 학·석사 연계과정을 포기한 경우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2.7.8., 2023.9.1.>

④ 연계과정에 선발된 학생은 대학원 등록 전까지 대학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연구활동중간보고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9.1., 2024.7.31.>

**제98조**(졸업) ① 학사과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3.3 이상인 학생은 7학기 말에 졸업한다. 다만, 7학기 중에 대학원 입학을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

② 제98조제1항을 이행하지 않는 학생은 학사과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94조에 따라 졸업할 수 없으며, 학부 8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사과정의 졸업사정 기준에 의한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9.1.>

③ 7학기에 학사과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3.3 이상인 학생이 7학기 중에 대학원에 입학하지 못한 경우, 학부 8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8학기 중에 대학원 입학을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하고, 8학기 말에 졸업하여 학·석사연계과정을 이어갈 수 있다.<신설 2024.7.31.>

**제99조**(중도포기) ① 본 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이 중도에 포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학기말까지 포기신청서를 대학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교무처장은 대학원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3.9.1., 2024.7.31.>

② 중도포기 또는 대학원 미입학 학생이 본 과정 이수로 인해 지급받은 장학금은 회수한다.<개정 2023.9.1.>

**부칙** <제181호,2024. 8. 6>

이 학칙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